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홍지광 의원)

의안 번호	25-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5. 2. .

발 의 자 : 홍지광, 고병준, 권영숙,
권인순, 김승수, 백남환,
신종갑, 안미자, 이상원,
차해영, 채우진, 최은하,
한선미

1. 개정이유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,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심의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의2)

나.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르도록 함(안 제12조)

3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 예고: 2025. 1. 16. ~ 1. 22.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·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

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1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</u> <u>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</u> <u>1.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·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</u> <u>2.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</u> <u>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</u> <u>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</u> <u>③</u> <u>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</u>
제12조(위원회의 운영) ①·② (생)	제12조(위원회의 운영) ①·② (현)

략)

<신 설>

행과 같음)

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【관 계 법 령】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
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재정관리국 예산정책과 이성애
연 락 처	02-3153-8054